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조남철

전화 02-3270-4395

## 보도자료

2024. 8. 23.(금)

제목

# 은평구 아파트 일본도 살인사건 수사결과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방식, 수사경위·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2024. 7. 29.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약 10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일본도를 사용한 **피고인 AOO**를 **금일 살인죄 및 총포화약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였음
- 서울서부지검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였고, 송치된 후 피고인 작성 일지 등 압수물 분석, 다수의 참고인 조사 등 면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결과,
  - 본건은,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피고인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임을 확인**하였고,
  - 피고인이 2024. 1.경 범행 목적으로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하고 범행 전 **일본도 소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골프백에 넣어 다니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규명하였음
-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 결정하는 등 **피해자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 **'이상동기'로 인하여 중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I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1. 피고인

- A○○(남, 36세, 무직)

### 2.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아파트 내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 BOO(43세)가 피고인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4. 7. 29. 23:22경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일본도(총 길이 약 102cm, 칼날 길이 약 75cm, 무게 약 1,020g)를 골프백에 넣어 다니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얼굴·어깨 등을 향해 힘껏 10여 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 [살인 및 총포화약법위반]

# II

## 수사 경과

- '24. 7. 30. 긴급체포
- '24. 8. 1. 구속영장 발부
- '24. 8. 6.~ 구속 송치 및 보완조사
  - 피고인 조사, 피고인 작성 일지 등 분석, 피고인의 가족 등 주변인물 조사, 119구급일지 확보 및 출동 구급대원 조사, 총포화약법위반 입건, 범죄피해자 지원 조치 등
- '24. 8. 23. 구속 기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 III

## 수사 결과

### 1.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행’을 규명

- 피고인이 '18.경부터 하루 일과 등을 기록해 온 약 2,000쪽 상당의 일지,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분석하고, 피고인과 그 가족을 조사한 결과,
  - 피고인은 '21.경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약 3년 동안 별다른 사회적·경제적 활동 없이 대기업에 취직하겠다는 일념 하에 사업분야 전망 분석 목적으로 정치·경제 분야 기사를 섭렵하던 중, 2023. 10.경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며 자신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망상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2024. 1.경 중국 스파이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검찰은 피고인이 도검을 사전에 허가된 용도와 달리 살상 용도로 계획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 후 함께 기소하였음

▣ (참고) 「총포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관련 조문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제17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②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피고인은 일본도 사용을 위한 연습용으로 목검까지 추가로 구매하고, 일본도 소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골프백에 넣어 다니는 등 망상에 사로잡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였음

※ 대검찰청은 '23. 8. 4.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 엄정 대응 지시」를 통해 강력범죄 전담부서 중심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신속·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신병과 증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음

## 2. 심신미약 상태의 부존재 사실 확인

○ 한편,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망상이 범행 동기로 작용하였을 뿐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 ①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 ② 범행 전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한 점,
- ③ 본건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 ④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진술 능력 및 그 구체성 등을 종합 고려

- 아울러 수사 결과 확인된 범행 동기와 수법,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음

### 3. 범죄피해자 지원

-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피해자 재판절차 참여권 보장,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

## IV

### 향후 계획

-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것임 ☐